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38 발의연월일: 2024. 11. 25.

발 의 자:윤준병・이병진・강준현

김문수 · 황명선 · 정동영

안호영 · 박민규 · 민형배

허종식 • 박희승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·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바,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·산하기관으로부터 협조를받을 필요가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 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·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적인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).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절차 및 내용"을 "절차,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활용 절차와 범위"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·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.

제25조의 제목 중 "자료의"를 "협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제공을"을 "제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조를 고용노동부 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"을 "요청받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취업 지원 등) ①・②	제10조(취업 지원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
	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
	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
	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
	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
	<u>속·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</u>
	<u>다.</u>
<u>③</u>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	<u>4</u>
원의 기준, <u>절차 및 내용</u> 등에	<u>절차, 내용 및 제3</u>
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	항에 따른 활용 절차와 범위
령으로 정한다.	
제21조(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	제21조(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	①
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	
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	
적 처리와 기록・관리업무의	
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(이	
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	
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<u><후단</u>	<u>이 경우 보</u>
<u>신설></u>	건복지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

② ~ ④ (생 략)

제25조(<u>자료의</u> 요청) ① 보건복지 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<u>제공을</u> 관계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 밖의 관련 기관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<u>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</u>의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(생략)

관 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	
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	
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.	
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세25조(<u>협조</u> 요청) ①	
<u>제공 및 그 밖</u>	
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에 관한 협조를 고용노동부 등	
<u>요청받은</u>	
② (현행과 같음)	